1. 법률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)

1. 법률*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5/2/25 개정 · 2025/3/31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531호, 2024. 10. 22. 공포, 2025. 3. 3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

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〉
(2024. 10. 22. 공포, 2025. 3. 31. 시행)

- 공매도의 불법 ·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등의 발행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등의 취득을 금지
-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
-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등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

2) 주요 내용

□ 다자간매매체결회사(ATS)를 통한 차입공매도의 방법(제208조 제2항)

— 투자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재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그 매도가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여야 함

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공매도를 하도록 함

□ 전환사채 등의 취득이 금지되는 차입공매도 기간(제208조의4 제3항 신설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— 공매도 시 전환사채 ·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 ·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 · 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

—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매수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

□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 계약의 상장주권 상환기간(제208조의6 신설)

—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주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상장주권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

  •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음

—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사유로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해당 상장주권 상환기간의 종료일이 됨

□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범위 및 조치의 내용(제208조의7 신설)

—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은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

— (대상 법인)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(순보유잔고)가 0.01%(1억원 미만 제외)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

— 조치 내용

  •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·운영

  • 임·직원 역할과 책임, 잔고관리, 공매도 내역 기록·보관(보관기간 5년 이상)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

  • 중앙점검시스템(NSDS)을 통한 공매도 사후점검을 위하여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,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

  •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,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함

—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· 이용 의무 면제

  •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

—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 ·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,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